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59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김은혜 · 박준태 · 강승규
정성국 · 서천호 · 김소희
김기현 · 김성원 · 최수진
김선교 · 고동진 · 조배숙
곽규택 · 정동만 · 김종양
엄태영 · 김도읍 · 김상훈
김재섭 · 박정하 · 안철수
안상훈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
지 경감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
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
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
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
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
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
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
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
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
다.

-----2029년 12월 31일-----
-----.

③ -----

-----2
029년 12월 31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